

조세 재정

2018. 6. 21(통권 제69호)

BRIEF

디지털경제 체제하의 소득세 과세 이슈와 시사점: 최근 OECD와 EU의 논의를 중심으로

유현영 회계사(044-414-2321)

홍민옥 회계사(044-414-2484)

조세 재정

BRIEF

디지털경제 체제하의 소득세 과세 이슈와 시사점: 최근 OECD와 EU의 논의를 중심으로

유 현 영 회계사(044-414-2321)

홍 민 옥 회계사(044-414-2484)

I . 논의 배경	2
II . 국제기구 논의 및 입법 동향	3
III . 시사점	11



I 논의 배경

- 디지털경제가 급속도로 확산되면서 기존의 사업과는 다른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생겨나고 있으나, 현행 국제조세체계하에서는 이러한 디지털 기반의 사업활동에 대한 과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디지털 거래는 전통적인 사업활동과는 달리 재화나 용역이 소비되는 원천지국에서 물리적 장소 없이도 사업활동을 영위할 수 있어 물리적 장소인 고정사업장 유무에 따라 법인세를 과세하는 현행 국제조세제도하에서는 법인세 과세가 어려움
- 이러한 디지털경제에서의 조세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OECD는 1998년¹⁾부터 20년에 걸친 기간 동안 논의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뚜렷한 과세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
 - OECD/G20 BEPS 방지 프로젝트(“BEPS프로젝트”)의 15개 실행과제 중 하나로 “Action 1. 디지털경제에서의 조세문제 해결²⁾”을 논의하면서 기존 고정사업장에 근거한 과세방법에서 벗어난 다양한 과세방안을 검토하였으나, 2018년 3월 16일 발표한 OECD의 중간보고서도 뚜렷한 결론은 제시하지 않음
- 유럽연합(EU)과 일부 국가는 OECD보다 디지털상거래 기업의 소득을 과세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EU를 포함한 이들 국가의 입법 논의와 입법 사례를 본고에서 살펴보자 함

1) OECD는 1998년 디지털경제가 기존 세법에 따라 과세하지 못하는 문제를 인식하고 “Challenges of Electronic Commerce”를 주제로 재무장관 회의를 개최하면서 부가가치세 과세방안과 소득세 측면에서는 기존 과세체계를 일부 수정하여 과세하는 방안을 논의함

2) OECD, *Addressing the Tax Challenges of the Digital Economy, Action 1 – 2015 Final Report*, OECD/G20 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Project, 2015.

II 국제기구 논의 및 입법 동향

1. 디지털경제의 조세 쟁점

- 디지털상거래가 급성장하면서 디지털상거래 다국적기업이 국내기업이나 다른 기업과 비교하여 세금을 적게 부담하면서 특별히 문제가 된 세목은 크게 부가가치세와 개인 및 법인 소득세임
- 부가가치세 측면에서는 소비된 장소에서 과세한다는 명확한 원칙을 두고 적절한 과세 방안을 찾는 것이 주요 쟁점이었으며, 2015년 OECD³⁾가 제안한 과세방안을 우리나라를 비롯한 여러 국가가 도입하면서 주요 디지털상거래에 과세하기 시작함
 - 특히 문제가 되었던 해외사업자와 국내 개인소비자 간 B2C(Business to Customer) 거래 중 일부는 과세할 수 있었음⁴⁾
- 소득세 측면에서는 물리적으로 고정된 사업 장소를 기준으로 과세하는 현행 세법의 과세 원칙부터 검토해야 하며 과세 원칙이 마련되더라도 여러 국가의 합의가 필요하여, 부가가치세보다 소득세 관련 대안을 마련하는 데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소요됨
 - 현행 조세체계⁵⁾ 하에서는 구글, 아마존과 페이스북과 같은 다국적기업이 매출을 위한 공장, 사무소, 판매점 등 해당 국가에 물리적으로 고정된 장소를 갖고 있는 경우만 과세할 수 있음
 - 디지털상거래 기업은 특정 국가에 물리적으로 고정된 사업 장소 없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업활동을 할 수 있어 현행 규정으로 이러한 디지털상거래 기업의 소득을 과세하지 못함

3) OECD(2015)

4) 우리나라 2014년 부가가치세법 제53조의 2【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국외사업자의 용역 공급과 사업자등록 등에 관한 특례】를 제정하여 디지털 상품이 우리나라에서 소비되는 경우 우리나라에서 과세할 수 있도록 외국사업자가 직접 우리나라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제도를 마련하였음, 우리나라가 B2C 거래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방식은 OECD 권고와 유사하나 과세대상을 일부 디지털상품만에 한해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으며 실제 다른 국가와 비교해서도 과세대상 범위가 상당히 제한적이어서 관련 규정을 정비할 필요는 있음

5) 각 국가의 법인세 규정과 양자간 및 다자간 조세협약을 의미함

- 디지털상거래 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과세하기 위해서는 소비자와 데이터가 존재하고 매출이 발생하는 등 상당 수준의 디지털 실재가 존재하는 국가에서 일부 소득을 과세 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함
 - OECD는 2015년 디지털상거래 소득의 과세를 위해 과세 연계점(nexus)을 고정사업장에서 매출, 디지털, 이용자와 기타 요인으로 변경하는 과세방안을 검토하였고⁶⁾, 2020년 뚜렷한 과세방안을 제안하기 위해 검토 작업을 진행 중임
- 그러나 OECD가 제시한 소득세 과세원칙에 대해 국가 간 의견차이가 존재하여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 디지털상거래 기업이 국내 소비자를 대상으로 얻은 소득을 과세하기 위하여 독자적으로 국내세법을 개정하더라도 조세조약 체결국과는 조세조약이 우선적용 되기 때문에 독자적인 세법 개정을 통해서는 디지털상거래 기업의 국내소득을 온전히 과세할 수 없음
 - 여러 국가 사이에 합의를 도출한 후 결과를 국제규범에까지 적용해야 디지털상거래 소득에 대한 실질적 과세가 가능하나, 국가 간 이해관계와 의견이 달라 합의가 쉽지 않은 상황임
 - 디지털상거래를 영위하는 대표적인 기업은 대부분 미국에 근간을 두고 있으며, 결과 현행 조세체계 하에서 디지털상거래 다국적기업의 소득은 미국 등 일부 국가에서 이미 과세됨
 - 결국 디지털상거래 기업이 개별 국가의 소비자를 대상으로 얻는 소득을 과세할 수 있는 새로운 원칙이 마련되면 미국은 디지털상거래 소득에 대한 과세기반을 상당부분 상실할 수 있음
- 그 결과, 디지털상거래 소득을 과세하는데 적극적인 일부 국가와 EU가 OECD에서 근본적인 과세방안 마련하기 전까지 독자적으로 과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 중임
 - 2015년 OECD는 디지털상거래 소득에 대한 근본적인 과세방안이 제시되기 전까지 일시적인 과세방안으로 소비세 형태의 균등세(Equalization levy)⁷⁾를 소개하였으며, 제도 도입을 권장하지 않았으나 이후 인도가 2016년 균등세를 실제 도입함

6) OECD(2015) paragraph 276

7) OECD(2015) paragraph 276, 357

2. 국제기구와 각 국가의 동향

가. OECD

1) 기존 논의

- OECD는 2015년 10월 BEPS프로젝트 “Action 1 디지털경제에서의 조세문제 해결” 최종보고서(“OECD보고서”)8)를 통해 디지털경제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 방안 관련 권고사항을 제시함
- 2015년 보고서는 부가가치세 징수와 관련해서는 각국에서 도입할 수 있는 정책방향과 징수모델을 비교적 구체적으로 제시한 반면, 법인세 부과와 관련해서는 예비적·보조적 활동에 대한 고정사업장 예외규정 수정을 제외하고는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제시하지 않음
 - 2015년 최종보고서 발표 이후에도 OECD는 디지털경제에서의 부가가치세 징수와 관련해서 2017년 부가가치세지침⁹⁾ 개정 및 국제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 징수방안 보고서¹⁰⁾ 발표 등을 통해 후속 조치를 수행한 바 있음
 - 디지털경제에 대한 법인세 과세방안과 관련해서는 BEPS프로젝트 “Action 7 고정사업장 지위의 인위적 회피 방지”에서 디지털경제의 특성을 고려하여 예비적·보조적 활동 등 고정사업장 적용 예외 규정을 수정함

2) 최근 소득세 과세 방안 논의: 2018년 Action 1 중간보고서

- 디지털경제에 대한 법인세 과세와 관련하여 2015년 보고서는 2020년까지 국제 차원의 합의된 접근방안을 제시하기로 하였으며, 이에 따라 OECD는 2018년 3월 16일 중간보고서(interim report)¹¹⁾를 발표함

8) OECD(2015)

9) OECD, *International VAT/GST Guidelines*, OECD Publishing, Paris, 2017.

10) OECD, *MechanismsfortheEffectiveCollectionofVAT/GST: Where the Supplier is Not Located in the Jurisdiction of Taxation*, 2017.

11) OECD, *Tax Challenges Arising from Digitalisation - Interim Report 2018: Inclusive Framework on BEPS*, OECD/G20 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Project, 2018., 세법연구센터, 「주요국의 조세동향 2018-4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8.에서 재인용.

- 디지털경제에 대한 법인세 과세방안은 BEPS프로젝트의 모든 참여국(BEPS Inclusive Framework)의 합의를 통해 최종 확정하기로 하였으며, 관련하여 2019년에 경과보고서를 발표 할 계획임
- 이번 2018년 중간보고서의 핵심은 개별 국가가 도입한 제도를 소개하고 한시적 과세 방안 마련 시 고려할 과세원칙을 소개한 부분이라고 판단됨
 - 중간보고서는 디지털경제의 가치창출과 사업모델의 특징과 조세 쟁점을 논의하고, 디지털경제에 대한 여러 국가의 법인세 과세방안의 개발 현황, 최종 합의방안 제시 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 할 수 있는 대응 방안과 후속과제 등을 소개함
- OECD BEPS Action1 중간보고서는 여러 국가가 취하고 있는 관련 대응 정책을 크게 네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여 설명하고 각 유형별로 제도를 시행한 국가의 제도를 소개함¹²⁾
 - 4가지 과세방안은 고정사업장 기준 수정(alternative applications of the PE threshold), 원천 징수 적용 강화, 디지털 서비스에 대한 매출액 기준 과세(turnover tax), 대규모 다국적기업을 적용 대상으로 하는 과세방안임
- 첫째, 고정사업장 기준 수정은 고정된 사업장소와 같은 물리적 실체가 계속적으로 존재하지 않더라도 과세할 수 있도록 내국세법과 조세조약을 개정하거나 해석을 변경한 경우임
 - 이스라엘, 인도, 슬로바키아, 사우디아라비아 등이 디지털사업장(digital presence)이나 서비스 고정사업장(service PE)의 개념을 도입함
- 둘째, 원천징수는 특정 디지털거래에서 발생한 소득이 배당, 이자와 사용료와 같은 수동소득(passive income)이 원천징수 대상에 포함되도록 예외규정을 마련하는 방법임
 - 그리스, 영국, 태국 등의 국가가 이러한 조치를 취함

12) OECD(2018), pp.133~159.

- 셋째, 매출액 기준 과세는 특정 디지털상거래 매출액을 일정 비율로 과세하는 방법으로 OECD BEPS Action1 보고서 발표 직후 EU가 제시한 과세방안 중 하나도 매출액 기준 과세였음
 - 이미 인도, 이탈리아가 유사한 과세제도를 시행 중임

- 넷째, 다국적기업을 대상으로 한 과세제도를 마련한 국가는 영국과 호주이며, 이 두 국가 모두 고정사업장의 지위를 인위적으로 회피한 다국적기업에 법인세율보다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우회이익세(Diverted Profits Tax)를 부과함
 - 다만, 우회이익세는 디지털상거래 소득의 과세를 위해 도입한 제도가 아니며, 다른 사업 유형에도 적용되는 제도라는 점에서 디지털상거래 소득의 과세를 위한 목적에서 우회이익세를 검토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으로 보임

- 한편, OECD는 2020년 국제적 합의에 따른 과세방안을 마련하기 전 한시적으로 디지털상거래 기업이 국내에서 얻는 소득을 과세하기 원하는 국가가 고려하여야 하는 6가지 정책 설계 원칙을 제시함¹³⁾
 - 조세조약, WTO규정과 EU지침 등 기존의 국제조세규범에 부합할 것
 - 한시적으로 운영하여 추후 국제차원에서 합의될 제도에 배치되지 않도록 할 것
 - 디지털 비즈니스 중 다수의 국가에서 소득에 대한 과세방법을 논의 중인 사업모델로 온라인 광고나 디지털 플랫폼과 같은 디지털 중개서비스 기업에 초점을 맞추어 제도를 적용할 것
 - 디지털경제의 조세문제를 해결함에 있어 지나친 조세부과를 지양할 것
 - 적용기준(threshold)을 적정하게 설정하여 스타트업이나 소규모 비즈니스에 과도한 납세협력부담을 주지 않을 것
 - 납세행정비용 및 제도의 복잡성을 최소화할 것

13) OECD가 디지털경제 과세를 위한 각 국가의 독자적이고 한시적 과세제도 도입을 권고하고 있지는 않음

- OECD는 디지털경제에서의 조세문제 해결과 관련하여 2019년 경과보고서를 발표하고, 2020년까지 최종보고서를 발표할 계획임
 - 2020년 최종보고서에는 과세 연계점(nexus)과 소득배분(profit allocation)에 관한 규정에 대한 국제적 합의를 바탕으로 한 디지털경제의 과세방안이 제시될 것임
 - 고정사업장의 물리적 실체가 아닌 이용자, 디지털 요인이나 매출 등의 중요한 디지털 실질을 과세 연계점으로 보고 이를 기준으로 과세대상 소득을 배분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으며, 과세 기준이 되는 요인을 과세 연계점이라 함

나. EU

- EU는 디지털경제 관련 조세문제 해결을 위해 지속적인 논의를 거쳤으며, 특히 디지털 비즈니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와 관련해서도 EU 차원의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방안을 마련함
 - EU는 2015년 “EU의 디지털 단일시장을 위한 전략(Strategy for the EU Digital Single Market)¹⁴⁾”을 발표하였으며, 그 일환으로 부가가치세에 대한 실행과제(Action Plan on VAT)¹⁵⁾를 수립하여 단계적으로 이행하고 있음
 - 부가가치세법상 외국사업자가 개인에게 디지털재화 공급 시 B2C 과세를 위해 외국사업자 등록 제도를 최초 제안하고 도입한 것도 EU였음
- 소득세 과세와 관련하여 2017년 9월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와 스페인을 중심으로 EU에 균등세(equalization tax)를 도입하려는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한시적 과세제도의 도입을 논의하기 시작함¹⁶⁾
 - 회의에 참석한 17개 국가 중 3개국 재무장관은 균등세 부과에 회의적이었으며, 나머지 국가의 재무장관은 뚜렷한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고 OECD나 G20에서 보다 근본적인 과세방안을 마련 할 경우 이에 따르겠다는 입장을 밝힘

14) European Commission(<https://ec.europa.eu/digital-single-market/en/policies/shaping-digital-single-market>, 검색일자: 2018.5.9.).

15) European Commission(https://ec.europa.eu/taxation_customs/business/vat/action-plan-vat_en, 검색일자: 2018.5.9.).

16) TAX NOTES INTERNATIONAL September 11, 2017. p1057, “Estonian Presidency Warns Against ‘Quick Fixes’ to Tax Digital Economy”, 2017.9.11.

- OECD가 디지털경제 소득세 관련 중간보고서를 발표한 직후인 2018년 3월 21일 디지털경제에 대한 EU 차원의 법인세 부과를 위해 근본적 과세방안과 한시적인 과세방안에 관한 두 개의 EU지침 제안서를 공개함¹⁷⁾
 - EU는 거대 디지털상거래 기업이 다른 업종의 기업보다 낮은 세율을 부담할 수밖에 없는 현행 조세체계의 한계를 지적하며, 공정한 과세(fair tax)를 위한 새로운 과세방안을 제안한다고 밝힘
 - 두 제안서는 EU위원회(European Commission)의 채택을 위해 제출될 예정이며, EU위원회에서 채택될 경우 EU 회원국은 2019년 말까지 관련 입법 절차를 종료하여 2020년 1월 1일부터 관련 세법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다만, 아일랜드 등을 중심으로 EU가 OECD 논의와 별도로 디지털상거래 기업이 EU 회원국에서 얻는 소득이나 일부 디지털거래에 과세하려는 움직임에 부정적인 국가가 존재하여 실제 입법 까지는 지켜볼 필요가 있음
- 첫 제안서는 “디지털 사업장(significant digital presence)” 관련 지침으로 EU가 제시하는 근본적 과세방안이며, 원천지국에 물리적 고정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도 요건을 만족한 경우 디지털 사업장(또는 가상 고정사업장)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 원천지국에서 법인세를 과세할 수 있도록 제안함
 - 특정 요건이란 특정 EU 회원국에서의 연간 매출액이 700만유로를 초과, 특정 EU 회원국에서 해당 디지털 플랫폼 이용자가 연간 10만명을 초과하거나 특정 EU 회원에서 디지털 기업이 체결하는 디지털 서비스 관련 사업계약이 연간 3천건을 초과한 경우임
 - EU 회원국 사이의 과세배분 기준을 온라인 광고의 경우 사용자가 광고를 시청한 횟수, 플랫폼의 경우 플랫폼에 참여한 사용자 수 등 사용 횟수나 방문 횟수와 같은 디지털데이터를 기반으로 소득을 배분한다는 점에서 특징적임
- “디지털 사업장” 관련 지침은 EU의 디지털 경제에 대한 근본적인 소득세 과세방안이나 OECD를 중심으로 국제적 합의에 의한 소득세 과세 방식 결정이 2020년에 계획되어 있어 그 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할 과세방안이 필요함

17) European Commission. (https://ec.europa.eu/taxation_customs/business/company-tax/fair-taxation-digital-economy_en, 검색 일자: 2018.5.9.), 세법연구센터, 「주요국의 조세동향 2018-4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8.에서 재인용.

- 현재 일반 기업의 평균 법인세 유효세율은 23.2%인 반면, 디지털 기업의 법인세 평균 유효세율은 9.5%로 공정경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¹⁸⁾, 국제적 합의를 통한 조세조약 개정 등 디지털 경제에 대한 근본적인 과세방안 이행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을 고려하여, EU는 EU 차원에서 한시적으로 적용할 한시적 법인세 과세방안 마련의 시급성을 지적함¹⁹⁾

- ● 이에 따라, 두 번째 제안서는 특정 디지털 서비스에 대해 한시적으로 적용할 법인세로 “디지털 서비스세(digital services tax)”를 제안함
 - 디지털 서비스란 특정 기업이 제공하는 디지털 서비스(온라인 광고, 유저 데이터 판매, P2P 플랫폼 서비스 등)를 통해 창출된 매출액의 3%를 부과하는 법인세로, 본 제안서는 과세 대상 기업과 과세 대상 서비스를 아래와 같이 제안함
 - 과세대상 디지털 서비스로 ① 사용자(user) 데이터 활용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서비스와 ② 사용자 간 재화와 서비스를 교환할 수 있도록 하는 플랫폼 서비스(P2P 플랫폼) 등 두 가지 형태의 서비스를 제안함
 - 전 세계 매출액이 연간 7억 5천만유로를 초과하고 EU 내 매출액이 연간 5천만유로를 초과하는 기업에 한해 디지털 서비스세를 적용할 것을 제안함
 - EU는 디지털 서비스세 도입 시 EU회원국의 추가적인 법인세 수입을 연간 50억유로로 추정함

- ● EU는 디지털 서비스세는 EU 또는 WTO의 무차별(non-discrimination) 조항을 위배²⁰⁾ 하지 않으며, 이중과세 문제도 소득공제를 통해 부분적으로 해결 가능하다는 입장임²¹⁾
 - 디지털 서비스세는 EU 회원국 및 비회원국에 모두에게 적용되는 법인세로 EU 및 WTO의 무차별조항을 위배하지 않음
 - 디지털 서비스세는 소득공제(비용 손금) 등의 형태로 이중과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며, 공제 형태는 각 나라에서 별도 규정할 수 있음

18) European Commission, “Time to establish a modern, fair and efficient taxation standard for the digital economy,” Communication from the Commission to the European Parliament and the Council, March, 2018, p. 4.

19) European Commission.

(https://ec.europa.eu/taxation_customs/sites/taxation/files/factsheet_digital_taxation_21032018_en.pdf, 검색일자: 2018.5.9.)

20) EU의 디지털 서비스세와 다르게 인도의 균등세는 외국기업이 내국기업으로부터 받는 대가만 과세대상으로 규정하여 내·외국인에 대한 WTO의 비차별대우 규정(non-discrimination)에 위배될 소지가 있으며, 이탈리아의 경우 비차별대우 규정에 위배될 위험을 고려하여 2019년부터 도입 예정인 디지털 서비스세의 적용 대상에 디지털거래를 제공하는 외국법인뿐만 아니라 내국법인도 포함하였음

21) European Commission. (http://europa.eu/rapid/press-release_MEMO-18-2141_en.htm, 검색일자: 2018.5.9.)

III 시사점

- OECD가 2015년 디지털경제의 조세문제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한 후 EU를 중심으로 디지털상거래 소득에 대한 과세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EU와 기타 주요국의 입법동향을 참고하여 2020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할 디지털경제 과세 방안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는 있음
 - OECD도 디지털상거래 소득의 과세를 위한 개별 국가의 한시적 과세제도 도입을 직접적으로 권장하지는 않으나, 과세제도 설계 시 고려할 요소를 제시하는 등 한시적 과세제도 도입에 부정적 이기보다는 개별 국가의 결정을 존중하는 입장을 취함
 - 또한, EU가 과거 디지털거래의 부가가치세 과세방안 마련과 도입에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해 왔다는 점에서 직접세 과세를 위한 EU의 디지털 서비스세나 디지털사업장에 대한 논의가 타 국가에 미치는 영향이 중요하다고 판단됨
- 현 시점에서는 다른 국가에서 도입한 과세제도 중 디지털상거래 다국적기업의 국내 소득을 과세할 목적에서 도입하거나 제안한 제도는 인도와 EU 등의 매출액 기준 과세방법이 유일함
 - 매출액 기준 과세는 거래규모가 큰 기업이 제공하고, 여러 국가에서 과세문제가 발생한 온라인 광고나 디지털 플랫폼 등의 일부 거래에 한정하여, 복잡하지 않은 방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OECD가 제시한 대부분의 과세원칙에도 부합함
- 그러나, 매출액 기준 과세제도는 설계하는 방식에 따라 조세조약, WTO 무역협정과 충돌할 소지가 있거나, 국내 IT 기업의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제도의 설계를 위해 국내·외적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야 함
 - 인도 정부는 법인세를 납부한 내국기업을 균등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 균등세가 소득과 관련된 세목일 수 있다는 논란과 함께 WTO 무역협정의 내·외국인 차별 조항에 위배될 수 있는 여지를 남겼음
 - EU는 내국법인을 과세대상에 포함하고 내국법인의 이중과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디지털서비스세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제안하고 있으나, 소득공제를 통해 내국법인의 이중과세 부담을 완전히 해소하지 못함

- 결국, 외국기업에 한정해서 과세하는 방안을 고려할 때는 WTO 무역협정이나 조세조약과의 충돌 문제를, 내국법인까지 과세대상에 포함하여 과세할 때는 국내 IT 기업의 이중과세 문제를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장기적으로는 OECD 차원에서의 디지털 고정사업장과 같은 과세 연계점(nexus) 논의에 참여하여 우리 정부의 입장을 전달하고, 과세방안에 대한 최종 합의 후 국내 세법과 조세조약의 개정을 준비할 필요가 있음
 - EU의 과세논의가 OECD와 주변 국가에 미치는 영향이 중요할 수 있어 현재 진행 중인 EU의 디지털 사업장 논의와 이와 관련한 EU 회원국의 입법 동향도 지속적으로 살펴야 할 것임

| 참고문헌 |

- 김빛마로·유현영·김민경, 『디지털경제의 주요 특징과 조세쟁점 연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6.12.
- 세법연구센터, 「주요국의 조세동향 2018-4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8.
- 오준석, 「디지털 거래의 유형과 가상고정 사업장에 관한 연구」, 『2018 한국국제조세협회 춘계 학술대회 및 정기총회』, 2018.4.26, pp.56~57.
- OECD, *Addressing the Tax Challenges of the Digital Economy, Action 1 – 2015 Final Report*, OECD/G20 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Project, OECD Publishing, 2015.
- _____, *International VAT/GST Guidelines*, 2017.
- _____, *Mechanisms for the Effective Collection of VAT/GST: Where the Supplier is Not Located in the Jurisdiction of Taxation*, 2017.
- _____, "Tax Challenges Arising from Digitalisation – Interim Report 2018: Inclusive Framework on BEPS," OECD/G20 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Project, 2018.

〈웹사이트〉

- European Commission, https://ec.europa.eu/commission/index_en, 검색일자: 2018.5.9.



디지털경제 체제하의 소득세 과세 이슈와
시사점: 최근 OECD와 EU의 논의를 중심으로

2018. 6. 21(통권 제69호)

- 발행처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주 소 :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36
 - 전 화 : 044-414-2126
 - 팩 스 : 044-414-2129
 - 인쇄처 : (주)아미고디자인
-

